

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

방송통신위원회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현황자료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1.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
2. 인터넷주소 사용 실적 및 현황
3.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
4.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조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위를 정하여 위촉되

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(在任)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5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.

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)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운영 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시범사업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

수 있다.

1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
2.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사업
3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범사업
4.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제10조(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된 정보·기술·인력의 교류
2.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,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
3.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
4.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

제11조의2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의2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신청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(이하 “관리기관”이라 한다)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할당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네트워크 구성 현황
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

3.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현황

제11조의3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할당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.

1.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

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

3.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

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(이하 “인터넷주소관리준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4(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기관은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제출을 등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다만 등록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.

제11조의5(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등

록하여야 한다.

1.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
2.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

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인터넷주소관리준칙)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 사항을 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법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)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,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또는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4조의2(사무국)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절차 진행과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.

제15조(조정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.

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기관,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

제16조(통지방법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,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을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.

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일시 중 늦은 날부터 기산(起算)한다. 다만, 당사자의

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.

1. 등기우편의 경우: 수령증에 적힌 일시

2. 전자우편의 경우: 발송한 일시

제17조(조정비용) ① 법 제22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은 조정신청 시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.
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조정부(調停部) 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고,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낸 조정비용을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.

제18조(수당)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분쟁조정 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횟수, 위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, 과태료의 부

과 ·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·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0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1호	300	700	1000
나.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7조 제1항제2호	300	500	1000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<u>시행에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
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매 3년마다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<u>개발·이용</u>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	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매 3년마다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<u>개발·이용</u>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	제2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<u>개발과</u>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		
②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현황자료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	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다음 각호의 현황자료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	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할 때 다음 각호의 현황자료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		
1. 인터넷주소관련 시설 현황	1.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	1. 인터넷주소 관련 시설 현황		
2. 인터넷주소 사용실적 및 현황	2. 인터넷주소 사용 실적 및 현황	2. 인터넷주소 사용 실적 및 현황		

현행	개정안
3.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. <u>그 밖의</u>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통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<u>현황자료의</u>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<u>현황자료의</u>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제3조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<u>법 제6조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한</u> 인터넷주소정책심 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 라 한다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 로 <u>하되</u>, 연임할 수 있다. 다 만, 직위를 정하여 <u>위촉 또는</u> 지명된 <u>위원은</u> 그 직위에 <u>재임</u> 하는 기간으로 한다. 제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<u>위</u> <u>원장은</u> 심의위원회를 대표하	3. 인터넷주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. <u>그 밖에</u> 인터넷주소 사용 및 인터넷 이용 관련 통계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<u>현황자료를 작성하기</u>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<u>현황자료</u>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제3조(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) <u>법 제6조제1항에</u> <u>따른</u>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 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 다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<u>하</u> <u>며</u>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직 위를 정하여 <u>위촉되거나</u> 지명 된 <u>위원의 임기는</u> 그 직위에 <u>재임(在任)</u>하는 기간으로 한 다. 제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) ① <u>심</u> <u>의위원회의 위원장은</u> 심의위원

현행	개정안
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	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<u>없</u> 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	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<u>없을</u>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<u>1인</u> 을 <u>두</u> 되,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.	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<u>1명</u> 을 <u>두</u> 며,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다.
제5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<u>위원장</u> 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	제5조(심의위원회의 회의) ① <u>심의위원회의 위원장</u> 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위원장은 회의를 <u>소집하고자 하는</u>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<u>부의사항</u> 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<u>통지</u> 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긴급을 요하거나</u>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<u>전일</u> 까지 통보할 수 있다.	② 위원장은 회의를 <u>소집할 때</u> 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<u>회의에 부칠 사항</u> 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<u>알려야</u> 한다. 다만, <u>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</u>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<u>전날</u> 까지 통보할 수 있다.
③ <u>심의위원회</u> 는 재적위원 과반	③ <u>심의위원회의 회의</u> 는 재적

현행	개정안
수의 출석으로 <u>개</u>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제6조 삭제 제7조(수당)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<u>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</u>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8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<u>운영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 제9조(시범사업) 방송통신위원회는 <u>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</u>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	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</u>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제7조(수당)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<u>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</u>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8조(운영 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<u>운영에</u>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 제9조(시범사업) 방송통신위원회는 <u>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</u>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

현행	개정안
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. 1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2. 인터넷주소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확산 사업 3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범사업 4.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(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) 방송통신위원회는 <u>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다음 각호와 <u>관련한</u>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인터넷주소자원과 <u>관련한</u> 정보·기술·인력의 교류 2.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,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3. 인터넷주소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	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. 1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2. 인터넷주소 관련 기술의 실용화 및 이용 확산 사업 3.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시범사업 4. 그 밖에 인터넷주소 사용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(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) 방송통신위원회는 <u>법 제8조제2항에 따라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</u> 민간부문의 국제협력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인터넷주소자원과 <u>관련된</u> 정보·기술·인력의 교류 2.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공동연구,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3.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 및 대응전략

현행	개정안
4. 인터넷주소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1조(위탁관리기관) 법 제9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제11조의2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신청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2	4. 인터넷주소 관련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11조(위탁관리기관) 법 제9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및 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1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5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 부설기관 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정보통신 관련 기관 4.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제11조의2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 신청) ① 법 제10조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<u>주소를</u> 할당받으려는 자는 법 제2조제

현행	개정안
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(이하 “관리기관” 이라 한다)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은 <u>신청서 기재사항의 확인</u>을 위하여 필요하면 <u>다음 각 호에 관한</u>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 1. 네트워크 구성 현황 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.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현황 <u>내역</u> 제11조의3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<u>방법</u>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	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(이하 “관리기관” 이라 한다)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이 정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은 <u>제1항에 따라 받은 할당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</u>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 1. 네트워크 구성 현황 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계획 3. 기존에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 현황 제11조의3(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기준 및 <u>할당방법</u>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할당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

현행	개정안
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. 1.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수량의 적정성 3.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(이하 “인터넷주소관리준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제11조의4(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	항을 기준으로 할당하여야 한다. 1.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여부 2. 할당받으려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계획 및 신청 수량의 적정성 3. 이미 할당받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사용률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에 관한 준칙(이하 “인터넷주소관리준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제11조의4(도메인이름의 등록신청) ① 법 제11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진흥원이 정하는 도

현행	개정안
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은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<u>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제출을 등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</u> <u>③ <신설></u>	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② 관리기관은 등록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<u>필요하면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제출을 등록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. 다만 등록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<u>③ 제2항 단서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통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.</u>
제11조의5(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<u>다음 각 호를</u>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1.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	제11조의5(도메인이름의 등록기준 및 등록방법) ① 관리기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<u>다음 각 호의 사항</u>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 1.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국제

현행	개정안
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	표준에서 정하는 기술규격 적합 여부
2.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 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	2. 인터넷주소관리준칙에서 정 하는 도메인이름의 종류별 등록자격 적합 여부
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 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.	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고, 신청서 기재사항을 데이터베이 스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.
제12조(인터넷주소관리준칙) 방 송통신위원회는 <u>법 제1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인 터넷주소관리</u> 에 관한 준칙중 인터넷주소의 사용기준 및 사 용조건 등 중요사항을 선정하 여 이를 <u>공고하여야</u> 한다.	제12조(인터넷주소관리준칙) 방 송통신위원회는 <u>법 제13조제1 항에 따라 승인한 인터넷주소 관리준칙</u> 중 인터넷주소의 사 용기준 및 사용조건 등 중요 사항을 선정하여 <u>공고하여야</u> 한다.
제13조(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회 위원장의 직무) ① <u>법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</u>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분쟁조 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 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	제13조(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 회 위원장의 직무) ① <u>법 제16 조에 따른</u>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위원회(이하 “분쟁조정위원 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분쟁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

현행	개정안
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<u>없</u>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14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장은 <u>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/u> ②<u>위원장이</u>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<u>소집하고자 하는</u>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<u>심사안건</u>을 각 위원에게 <u>서면 또는 전자문서</u>로 <u>통지하여야</u> 한다. 다만, <u>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</u>가 있는 경우에는 <u>기간</u>을 단축할 수 있다. ③<u>분쟁조정위원회는</u>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·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또는 <u>음성</u>을 동시에 송	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<u>없을</u>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제14조(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) ① <u>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</u> ② <u>위원장은</u>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<u>소집할</u>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<u>회의에 부칠 사항</u>을 각 위원에게 <u>서면이나 전자문서</u>로 <u>알려야</u> 한다. 다만, <u>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</u>가 있는 경우에는 <u>통지기간</u>을 단축할 수 있다. ③ <u>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</u>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,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또는 <u>음성</u>이 동시에

현행	개정안
<u>신·수신하는</u>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<u>원격회의방식</u>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당해</u>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제14조의2(사무국)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<u>위원장의</u> 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절차진행 및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. 제15조(조정의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<u>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</u>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	<u>송수신되는</u>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<u>원격회의 방식</u>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해당</u> 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제14조의2(사무국)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<u>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</u>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<u>절차 진행</u>과 그 밖에 <u>분쟁조정위원회의</u>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. 제15조(조정의 신청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<u>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</u>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과

현행	개정안
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 제출요구통지서를 <u>송부하여야</u> 한다.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<u>서면 또는 전자우편</u>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기관,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<u>조정절차 종결일까지</u> 등록정보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 ⑤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 제16조(통지방법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,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<u>사본</u>(이하 이 조에서 “관련 자	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 제출요구 통지서를 <u>보내야</u> 한다. ③ 피신청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답변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<u>서면이나 전자우편</u>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기관,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또는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에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<u>조정절차가 끝나는 날까지</u> 등록정보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. 제16조(통지방법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서,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<u>사본을 보내거나</u> 조정안 등을 통

현행	개정안
료 등”이라 한다)을 송부하거나 조정안 등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에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을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.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일시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한다. 다만,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. 1. 등기우편의 경우 : 수령증에 기재된 일시 2. 전자우편의 경우 : 발송한 일시 제17조(조정비용)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조정	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주소 등록정보상의 당사자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을 각각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주소로 발송한다. ②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일시 중 늦은 날부터 기산(起算)한다. 다만, 당사자의 우편주소가 부정확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반송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날부터 기산한다. 1. 등기우편의 경우: 수령증에 적힌 일시 2. 전자우편의 경우: 발송한 일시 제17조(조정비용) ① 법 제22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은 조

현행	개정안
신청시 조정비용을 <u>납부하여야</u> 한다.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<u>조정부</u> 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<u>납부된 금액</u>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<u>환불하고</u>,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<u>납부된 금액</u>을 <u>환불하지</u> 아니한다. ③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</u> 조정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<u>얻어</u>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. 제18조(수당)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에 대하여는</u> 예산의 <u>범위안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9조(분쟁조정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	정신청 시 조정비용을 <u>내야</u> 한다.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 등에 따라 <u>조정부(調停部)</u> 구성 전에 종결된 경우에는 <u>신청인이 낸 조정비용</u> 중 조정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<u>되돌려</u> 주고, 조정부 구성 후에 종결된 경우에는 <u>신청인이 낸 조정비용</u>을 <u>되돌려 주지</u> 아니한다. ③ <u>제1항에 따른</u> 조정비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<u>받아</u>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. 제18조(수당)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<u>위원에게는</u> 예산의 <u>범위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19조(분쟁조정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

현 행	개 정 안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<u>위원장</u>이 정한다. 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<u>정도</u>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<u>경감</u>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<u>때에는</u>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,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	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<u>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</u>이 정한다. 제2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<u>횟수</u>, 위반 <u>정도</u>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<u>감경</u>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<u>경우에도</u>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,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 소관 부서명 >

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	
연 락 처	(02) 750 - 2742